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71
----------	-----

2020. 12. 18.(금)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30일
- 나.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3일
-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 12월 8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미애 의원)

### 가. 제안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과 연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의 시정 및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 신설
-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나.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 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함(안 제6조)

-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 가. 제출배경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와 여성이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도내 여성 사업체수는 2017년 기준 총 47,226개로 전체 사업체 111,738개 중 42%를 차지하고 있음
- 도내 여성사업체 중 중견·대기업은 4개이고, 중소기업이 47,222개이며, 중소기업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42,975개, 91%)에 해당되며, 업종 분포는 ‘숙박 및 음식업’(17,233개, 36.5%)과 ‘도·소매업’(12,623개, 26.7%)이 전체 여성사업체의 63.2%를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여성 기업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규모면에서 영세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업종도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어려운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이는 여성 창업자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착형 업종을 선호하는 성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런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요구됨

**[ 충청북도 여성기업 현황 ]**

• (기업규모) 소상공인이 전체의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개사, %)

구분	전체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소계			
'17년 (여성)	47,226 (100.0)	42,975 (91.0)	46,806 (99.1)	416 (0.9)	47,222 (100.0)	4 (0.0)
'17년 (전체)	111,738 (100.0)	98,217 (87.9)	109,198 (97.7)	2,399 (2.1)	111,597 (99.9)	141 (0.1)

• (업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경쟁포화 업종의 비중이 높음 (단위 : 개사, %)

구분	계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17년 (여성)	47,226 (100.0)	17,233 (36.5)	12,623 (26.7)	5,466 (11.6)	2,517 (5.3)	2,676 (5.7)	6,711 (14.2)
'17년 (전체)	111,738 (100.0)	26,253 (23.5)	28,842 (25.8)	9,843 (8.8)	4,258 (3.8)	12,107 (10.8)	30,435 (27.3)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5조는 도지사에게 충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여성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안 제7조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및 경비지원을 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제1항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우선 구매제도를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 종합 검토의견

- 도내 여성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약166조)의 7.7%를 차지하고,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약 2.7억원으로 전체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 14.8억원 보다는 매우 적은 수준임('17년 기준)

### [ 여성기업 경제적 기여도 ]

- (매출) 여성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7%를 차지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16년			'17년		
	기업수	매출액	평균 매출액	기업수	매출액	평균 매출액
전체	110,764	1,603,894	14.4	111,738	1,656,233	14.8
여성기업	46,385	119,009	2.5	47,226	126,976	2.7
(비중)	(41.9)	(7.4)	(17.7)	(42.2)	(7.7)	(18.2)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영환경에서 아직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이 활성화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사항과 「지방계약법」 등 타 법령의 여성기업 우대 사항을 명시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해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기업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관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북도 여성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인 대표

5.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 계약 및 공공계약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용자 지원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마케팅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기업 홍보·지도)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비 용 추 계 서

## 1. 사업개요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7조의 실태조사 관련 예산
  - 제9조의 여성기업의 활동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

## 3. 관련조문

- 안 제7조(실태 조사)
- 안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으로 함
- 나. 추계 결과 : 491,000천원(도비 460,000, 자부담 31,000)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4개 사업	491,000	88,200	88,200	138,200	88,200	88,200

※ 사업별 비용추계내역 : 별첨

##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강 성 환(220-3210)

## (붙임 1) 여성기업 지원 사업별 5개년(2021~2025) 투자계획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천원)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4개 사업	합계	491,000	88,200	88,200	138,200	88,200	88,200
	도비	460,000	82,000	82,000	132,000	82,000	82,000
	자부담	31,000	6,200	6,200	6,200	6,200	6,200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합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도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여성기업 협력 네트워크 지원	합계	66,0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도비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자부담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충북 여성기업인 대회	합계	1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도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자부담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여성기업 실태 조사	합계	50,000	-	-	50,000	-	-
	도비	50,000	-	-	50,000	-	-